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단체와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199호, 2025.12.4.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범위 규정(안 제2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 감면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주택 공급기준 규정(안 제3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건
설하려는 경우에 공급 대상,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등 주택 공급기준
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02. 06. ~ 03. 2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택공급 기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확인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의 종사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종사자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 직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0 - 6601